

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이순우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5. 6. 13.

사 회 건 설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547호로 2025년 5월 30일 이순우 의원 외 3명으로
부터 발의되어 2025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및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재해와
보험의 명칭 등을 “풍수해·지진재해”로 변경함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풍수해·지진재해보험법」, 「소상공인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5. 6. 3.~2025. 6. 10.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□ 개정 배경 및 취지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위법인 「舊풍수해보험법」에서 “풍수해”의 정의는 ‘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·홍수·호우(豪雨)·강풍·풍랑·해일(海溢)·대설·지진(지진해일 포함)으로 발생하는 재해’로서 “지진 및 지진해일”을 포함하고 있으나,
 -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“풍수해”를 ‘폭풍우와 홍수로 말미암은 피해’로 정의하고 있어 풍수해보험의 보장대상이 되는 자연재해의 범위가 사전적인 의미의 풍수해보다 더 넓게 인정하고 있음.
 - 이에 따라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여 정의를 명확히 하고, 국민이 보험 보장범위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법률 제명 및 정의 등에 지진재해를 명시하고자 「풍수해·지진재해보험법」으로 개정되었으며,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
□ 주요 내용으로

- 상기 개정 배경 및 취지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의 제명을 일괄적으로 ‘풍수해·지진재해보험법’으로 정비하고,
 - 상위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‘풍수해보험’을 ‘풍수해·지진재해보험’으로 용어를 정비하고,

- 인용하고 있는 「소상공인법」 또한 개정된 제명인 「소상공인기본법」으로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함.

□ 검토결과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취지 및 개정된 제명을 반영하여 조례 전반적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
 - 구민이 해당 보험의 보장범위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, 조례의 법적 정합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.

참고 자료

1 풍수해 · 지진재해보험법

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풍수해”란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·홍수·호우(豪雨)·강풍·풍랑·해일(海溢)·대설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.
- 1의2. “지진재해”란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.
2. “풍수해·지진재해보험”이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.

제4조(보험목적물) 풍수해·지진재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(이하 “보험목적물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으로 한다.

1.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
2.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
3. 그 밖에 피해의 가능성과 보험의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